

南北交流協力關係法規集

1993

統 一 院

목 차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및 後續法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
남북한왕래주민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77
남북한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83
남북한교역대상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95

南北協力基金法 및 後續法令

南北協力基金法	103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111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123
남북협력기금 운용 관리 규정	129

附 錄

〈남북한 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5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 200
-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10

〈북한 법령〉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214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219
- 외국인 기업법223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및 後續法令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규칙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制定 1990. 8. 1 法律 第4239號

改正 1990.12.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1992.12. 8 法律 第4522號(出入國管理法)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間의 相互 交流와 協力を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 올 수 있는 南韓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 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貸借·贈與등을 원인으로 하는 南韓과 北韓間의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으로 행하는 文化·體育·學術·經濟등

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を 目的으로 하는 行위에 관하여는 正當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第4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的 相互交流 및 協力(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協력에 관한 重要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院에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90.12.27)

第5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統一院長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개정 90.12.27)

③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⑤協議會에 幹事1人을 두되, 幹事는 統一院 所屬 公務員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개정 90.12.27)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 議決한다.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の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力和 관련된 重要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協議會의 會議은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協議會의 會議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

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南·北韓 往來) ①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이 發給한 證明書を 소지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②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の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 범위와 申告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海外同胞 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を 소지하여야 한다.

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 12 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 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12.27)

第 13 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金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0.12.27)

第 14 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院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0.12.27)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自動承認品目·制限承認品目 또는 禁止品目の 구분
2. 制限承認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第 15 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12.27>

第 16 條(協力事業者) ①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7 條(協力事業의 승인) ①第16條 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業마다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8 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12.27>

第 19 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0 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は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12.27>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1 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第 69 條 내지 第 76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92.12.8>

第 22 條(通信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

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23 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は 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第35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檢疫法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 24 條(南北交流·協力の 支援)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 25 條(協調要請) 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 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

건의 陳述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第 26 條(다른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物品의 搬入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防衛稅法第4條第1號의 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③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1. 外國換管理法
2. 外資導入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6. 法人稅法
7. 所得稅法

8. 租稅減免規制法

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關稅等還給에 관한特例法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第2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を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晤·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韓의 住民과 接觸한 者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を 發給받거나 第9條第3項, 第13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北韓을 往來한 在外國民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 28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第 29 條(刑의 減輕) 第27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의 罪를 범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 30 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附 則<90.12.27>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省略>

第 2 條 내지 第 10 條 省略

附 則<92.12.8>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6 條 省略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 12.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개정 91.2.1, 93.3.30>

1. 판문점
2. 출입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 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개정 91.2.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의 위임을 받는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 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

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 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 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개정 91.2.1>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 · 8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 · 8면

④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2.1>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10 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4매

4.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2.1〉

④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 11 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나. 초청장 사본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 12 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1.2.1>

1. 100인이상의 단체 왕래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 13 조(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14 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91.2.1>

1. 재발급 신청서

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 2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 15 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 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 16 조(방문기간) ①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17 조(증명서의 반납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 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18 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 19 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

로 한다.〈개정 91.2.1〉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91.2.1〉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 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 20 조(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회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21 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개정 91.2.1>

제 22 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91.2.1>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등은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개정 91.2.1>

제 23 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 24 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4 장 교 역

제 25 조(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2.1, 93.3.6>

제 26 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개정 91.2.1>

④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개정 91.2.1, 93.3.6>

제 27 조(변경 승인사항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 통일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③ 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
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
을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개정 91.2.1, 93.3.6)

제 28 조(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
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개정 91.2.1, 93.3.6)

제 29 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 통일원장관은 법 제15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2.1, 93.3.6)

②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
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1.2.1, 93.3.6)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1.2.1, 93.3.6)

제 5 장 협력사업

제 30 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91.2.1)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 31 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1〉

제 32 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91.2.1〉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 33 조(취소절차)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4 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1. 사업계획서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개정 91.2.1>

제 35 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 36 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 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③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37 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38 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1.2.1〉

1. 북한측 상대방과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
해제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1. 2.1〉

③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 39 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 40 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 41 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42 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 43 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 44 조(협의등) ①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의 운행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선박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1.2.1〉

제 45 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개정 91.2.1〉

제 46 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의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개정 91.12.31〉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 47 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 요금에 의한다.〈개정 91.12.31〉

제 48 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

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1.12.31〉

제 49 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0 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2.1〉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 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

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 51 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 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의

과세 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을 준용한다.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준용한다.

제 52 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 53 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91.2.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 칙(91.12.3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3 조 생략

부 칙(93.3.6)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 칙(93.3.30)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3.27)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방문신고서등)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7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원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91.3.27>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1.3.27>

제 8 조(출입신고서등) ①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3.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별 표]

심 사 확 인 인

출입장소 :

일 자 : 년 월 일

출입심사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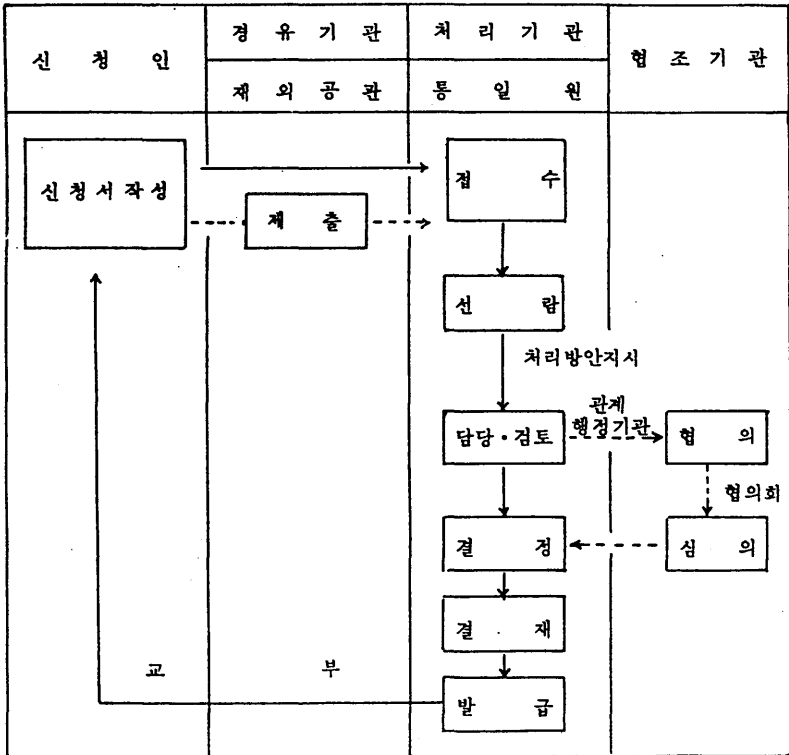
15 mm

75 mm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병역법 제 6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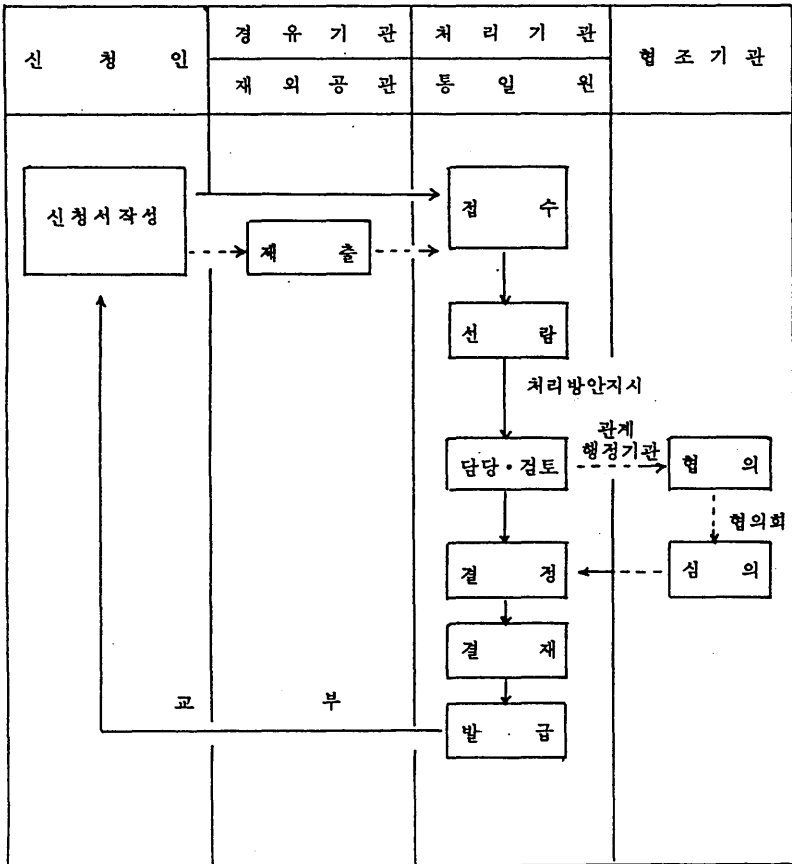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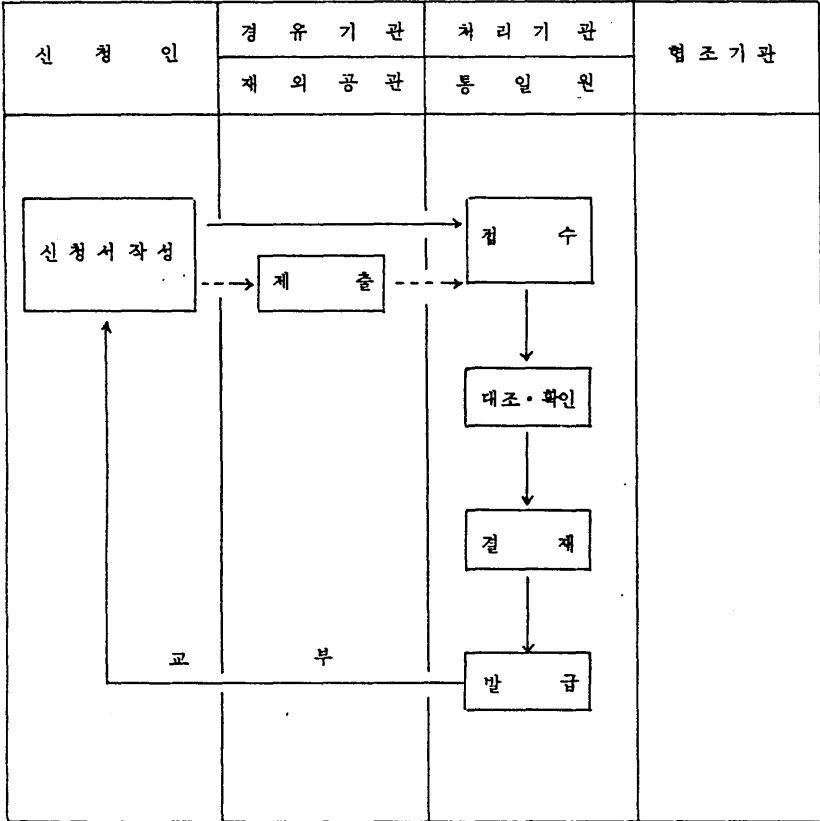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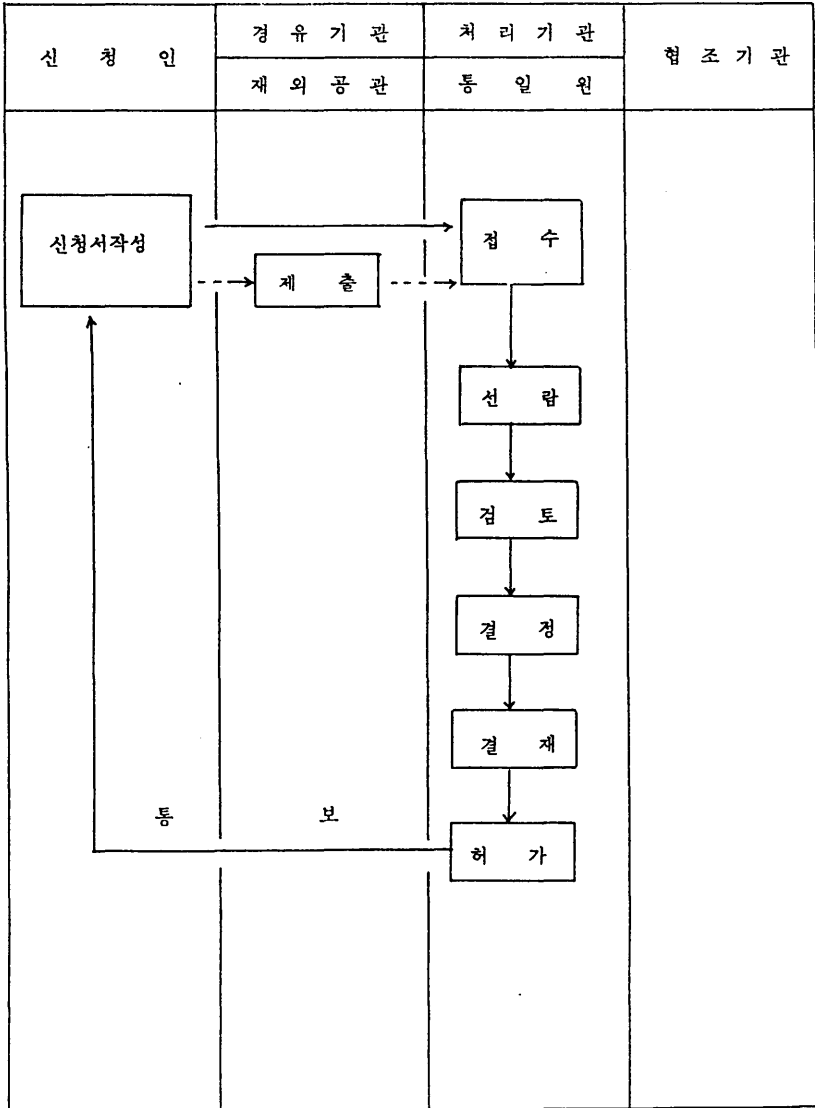


- 첨부서류 : 1.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동일원장관이 접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뒷면 >



[별지 제 5 호시식]

-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합판 사진.
- * 신고번호는 공판별 전문 전치부호-신고년도(마지막 두자리) - 공판별 신고접수·순위로 공판에서 기재.
(예 :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북한 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_____ 신고일자: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신 고 자	성명				성별	남·여		사 진 (반명합판) 3cm×4cm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업				전화번호				
②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③방문경위 (입북비자획득등)									
④방문목적(사유)									
⑤방문기간(일정)									
⑥방문경로 (경유지포함)									
⑦여행지내 연고자 또는 접촉인물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지위		판계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p> <p>첨부서류: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고 인: _____ ㉞(또는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대 사 (총 영 사) 귀하</p>									

11022-00711 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복급) 80g/m²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보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여	시 진 3 cm × 4 cm
	주소·연락처	(전화 :)			
	직 업	(전화 :)			
	여 권 번 호	여권유효기간			
①방문대상자 (방문기관) (3인부터는 별지작성)	성 명	소 속 및 직 위	기 타		
③ 방문목적					
④ 출발 일			⑤ 귀 환 일		
⑥ 방북신고미필사유					
⑦ 방문 및 귀환경로					
⑧ 방 문 일 정					
년 월 일	방 문 지 역		활 동 내 용 및 면 담 자		
※ 세부활동내용 및 참고사항은 별지작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 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년 월 일					
작성 자:			⑨ (또는 서명)		
대사(총영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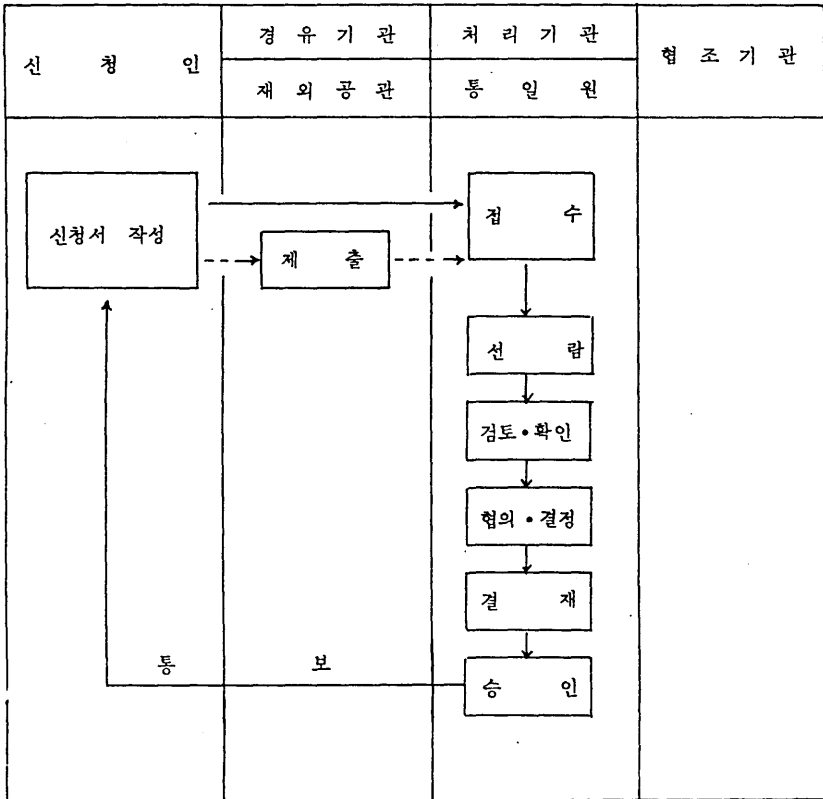
11022-00811 민
90.10.12 승 인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80g/m²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업구분

주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6조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인

[별지 제 11 호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상호(명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 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노선					
운행승인 유효기간					
운행승인구분	정 기		회	부정기	회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인</p>					

11022-01511 일
99.10.12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 g/m²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13 통일원고시 제90-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다.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마.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나.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라. COCOM 수출 규제품목

마. 보호문화재등

바.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가.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나. 검역대상 물품

다.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

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반출·입 규제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7.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고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 1990. 8.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고시 (통일원고시)에 따라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상대방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은 남북한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남·북한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경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검사

제 3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조(화폐등의 신고)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여행자수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등록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조(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조(검사방법)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

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장 휴대품 반출입

제 7 조(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문목적, 체류기간, 방문자의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휴대품은 반출입을 허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금지물품

②다음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된 반출입 제한물품

2.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외국화폐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등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7조에 규정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휴대품보관증(별지 제2호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반출입이 규제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중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과 세

제 10 조(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도 포함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 등

제 11 조(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남·북한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되는 물품은 일반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과 같이 처리한다.

제 12 조(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대한민국 세관
왕래주민 휴대품 신고서

199 년 월 일

이 신고서는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를 신속히 하기위
한 것이오니 성실하게 기재하신 후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성별 :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4. 주 소 :	
5. 직 업 :	6. 국 적 :
7. 방문목적 :	8. 방문증명서(여권)번호 :
9. 방문기간 :	10. 동반가족수 : 명

통관안내

1. 귀하의 방문목적, 방문기간, 직업등을 참작하여 휴대품의 통
관 허용범위가 결정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2. 휴대품중 반입이 규제되는 물품(총기류 등)은 귀환할 때 찾
아가시면 됩니다.
3. 후면 신고대상 물품은 반드시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

서면신고대상물품

해당란에(O)표

소 지 물 품	있음	소 지 물 품	있음
총포, 도검, 화약등 무기류		국헌, 공안, 풍속을 해할 물품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류		화폐, 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동물, 식물류 등 검역대상 물품		무선통신용 송·수신기	
35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			
신고금액 :			

위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고인 서명 :

검사대 번호 :	검사자 :
----------	-------

[별지 제 2 호서식]

휴대 품 보 관 증

보관증번호 :

화물Tag 번호 :

성 명		생년월일	19 . .					
		국 적						
방문증명서 번호		방문기간						
주 소								
<p>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물품을 보관합니다.</p>								
<table border="1"> <tr> <td>담 당</td> <td>19</td> </tr> <tr> <td></td> <td>서 을 세 관 장</td> </tr> </table>		담 당	19		서 을 세 관 장			
담 당	19							
	서 을 세 관 장							
포장종류	수 량	품 명	중 량	비 고				
계								

보관물품인도내역			
보관증 번호		인도물품	
화물 Tag번호			
출입국 일시		성 및 명 서 및 명	(인)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
차에관한고시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한고시

제정 1990. 9.25 통일원고시 제90-2호

개정 1991. 5. 6 통일원고시 제91-2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 승인절차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역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조(교역대상물품의 공고) ①대외무역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다음 각호의 공고는 이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의 공고로 본다.

1. 수출입공고
2. 별도공고
3. 통합공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별도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수출·수입의 제한이 없는 품목은 반출·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기타의 품목은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으로 각각 본다. 다만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및 통합공고에서 수

출·수입제한이 없는 품목중 미술품 및 도예·공예작품과 우표, 화폐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본다. <개정1991.5.6 단서신설>

제 2 조(반출·입의 승인) ①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제한승인품목의 반출·반입은 통일원장관이 상공부장관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승인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자동승인품목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한을 위탁 한다.

제 3 조(반출·입 승인실적의 보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을 승인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승인서상에 “남북한교역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승인결과를 3일 이내에 통일원장관 및 상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 4 조(기타 반출·입 승인절차) 반출·반입승인절차에 관하여 법·동법시행령 및 이 고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5.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南北協力基金法 및 後續法令

南北協力基金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南北協力基金法

南北協力基金法

制定 1990. 8. 1 法律 第4240號

改正 1990.12.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第 1 條(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와 協力を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 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 3 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 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 4 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債券의 發行으로 造成된 資金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資 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第6條(債券發行) ①政府는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國內에서 南北協力基金債券(이하 “債券”이라 한다)을 發行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債券은 統一院長官의 요청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이 發行한다.<개정 90.12.27>

③債券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외에는 國債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90.12.27〉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重要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90.12.27〉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개정 90.12.27〉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等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力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債券의 元利金 償還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개정 90.12.27)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개정 90.12.27)

③會計關係職員等의 責任에關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

事에게, 支出管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 10 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 11 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의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개정 90.12.2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到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한다.

第 12 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개정 90.12.27>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投融資特別會計에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 13 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 14 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개정 90.12.27>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0.12.27>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省略>

第 2 條 내지 第 10 條 省略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12.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 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91.2.1)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1.2.1)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91.2.1)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91.2.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용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1.2.1, 93.3.6)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 · 문화체육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 · 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 · 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1.2.1)

④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 8 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9 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 11 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

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 12 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2.1>

제 14 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 15 조(결산보고서)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 16 조(기금의 계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 17 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8 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

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1.2.1)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 19 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 20 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원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2.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91.2.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2.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 칙(91.3.6)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정 1991. 3.27 총리령 제384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이상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지원
3.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
4.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자금 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억원이상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6.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7.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3 조(경미한 사항)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숙식비·교통비등 기본적 경비의 지원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1억원미만의 지원
3.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자금지원·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
4. 법 제8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의 기금사용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중 5천만원미만의 보증 또는 손실보조의 약정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

식]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②국토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국토통일원”을 “통일원”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내지 제14조, 제16조 내지 제20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별지 1]사단법인정관준칙 제6장·제8장과 [별지 2]재단법인정관준칙 제2장·제4장 및 제6장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17 통일원고시 제91-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 조(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 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위탁수수료) ①통일원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 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

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

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 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 8 조(채무의 조정) ① 통일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

는 경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4 장 무상지원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 9 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 10 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 10 조(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11 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 10 조제 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 12 조(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 13 조(지원절차)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 14 조(지원통화) ①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 원화로 한다.

제 15 조(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 18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19 조(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 20 조(지원절차) ①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 21 조(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지원신청 변경)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시행시기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 제20조 제1항의 신청인은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지원방침 결정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감액지급, 지급액의 환수, 지급액의 일시환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23 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24 조(지원통화) ①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 25 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

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5장 손실보조

제 26 조(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
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나.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 다.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손실
 -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
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
는 회수지연
 - 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원금과 약정이
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 다.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 27 조(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
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제 28 조(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제26조제2호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
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
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내로 한다.

제 29 조(손실보조 약정절차)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하여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다.

제 30 조(업무취급 수수료)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조약정 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업무취급수수료”라 한다)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 후 손실보조약정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31 조(손실보조약정의 효력) ①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취급수수료가 납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보조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2 조(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33 조(손실보조약정의 내용변경) ①피약정자가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의 내용변경에 따라 손실보조약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당해 사업내용을 변경한 때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3부에 당해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1부에 승인하는 뜻을 기재·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손실보조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변경승인서의 교부전에 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 34 조(업무취급수수료의 환급) ①손실보조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의 개시등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업무취급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

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업무취급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취급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 35 조(손실보조신청) 피약정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6 조(손실보조금 지급)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100분의 90이내에서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약정으로 정한 비율이내로 한다. 다만, 통일원장관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 교역·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그 손실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제 37 조(면책) ①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금은 손실보조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8 조(손실보조약정 해지등) 기금은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손실보조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39 조(손실보조금의 반환)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40 조(대위권) ①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41 조(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

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 42 조(회수금의 납부) ①피약정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연체이자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금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 43 조(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손실보조약정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매 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 44 조(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북한주민과 기술·자본·인력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제 45 조(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남한주민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100분의 90범위내로 한다.

제 46 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대출형식

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다만, 당해 관련계약이 원화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원화표시 증서대출로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금이 분할집행되는 경우에는 최종집행시까지 원화 또는 외화표시 어음대출로 할 수 있다.

2. 이자율 및 이자징수방법

가. 이자율은 연 5%로 한다.

나.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상환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연체대출금이자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 이자는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출자금의 분할집행 등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선취할 수 있다.

3. 대출기간은 10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4. 원금상환 방법

원금은 연1회이상 정기분할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년이내의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5.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 47 조(사전협의) ①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사전협의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필요성등에 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 48 조(대출절차)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2부를 통일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 49 조(사업보고)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빙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

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대출금 상환) ①제46조제3호의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 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2영업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부터 제46조제2호의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 51 조(대출조건 변경) ①경제협력사업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실행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조건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조건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에 준하여 대출조건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제 52 조(예외취급) 통일원장관은 거래의 특성, 긴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44조의 대출의 대상, 제45조의 대출 비율, 제46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 53 조(반출·반입자금대출)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 45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2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③통일원장관은 반출·반입자금대출의 조건등을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54 조(결과보고)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원장관에

계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7장 채무보증

제 55 조(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 56 조(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 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용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 57 조(보증절차) ①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통일원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 58 조(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 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 59 조(손실보전 신청 등) ①금융기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2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 60 조(보전이자율 등)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원장관이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절 금융기관용자자금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 61 조(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용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 62 조(지원절차) ①금융기관이 제61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2부를, 제6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2부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 63 조(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 64 조(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북한원화매매신청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65 조(인수조건 등)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원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66 조(북한원화의 환전) 재무부장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회복지원

제 67 조(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68 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용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9 조(지원금액·지원조건)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70 조(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 71 조(기금의 출연) ①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72 조(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 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이 규정 및 통일원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별지 제 1 호서식]

① 신청인	성명 (단체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소	(TEL)						
	연락처	(FAX)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주선·지원자						
② 방문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방문증명서번호				
③ 방문목적				<input type="checkbox"/> 방문지역 <input type="checkbox"/> 남한 <input type="checkbox"/> 북한				
⑤ 방문계획 (총박일)	일정	월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숙박일수	교통수단	숙소
	방문지에 도착할 때까지							
	방문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방문지에서 출발한 이후							
⑥ 자금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자비에 의한 왕래가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남북한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함							
⑦ 자금신청액	총액	금						
	내역	교통비:	숙박비:	식비:	기타경비:			
⑧ 자금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원화, 북한원화) 직접 수령 요망 <input type="checkbox"/> 다음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요망 예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 요망: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 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뒷 면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신청인 ⑨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봉인원장관 귀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 수수료 없음 </div> </div>								

1106-022-00111민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세용지(복합) 80 g / m²

-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 (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 (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급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위임장 (대리인에 한함)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손실보조약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① 신청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 사업 상 대 자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③ 사업개요	계 약 금 액			
	사 업 내 용			
	결 제 조 건			
	반출, 반입 또는 사업개시일			
④ 손실보조 약 신청내용	신 청 구 분	<input type="checkbox"/> 교 역	<input type="checkbox"/> 경제협력사업	
	약 정 금 액		적 용 환 율	
	손실보조 약정비율		약 정 기 간	
⑤ 기타사항	남북협력기금의 용자여부			
	특 기 사 항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2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뒷 면</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p> <p>통 일 원 장 관 귀 하</p>				
				수 수 료
				없 음

1106-022-00611민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

-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손실보조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5.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6. 제각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납품한 관계기관외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9.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경제협력사업
 반출
 반입

자금대출사전협의서

[별지 제9호서식]

①차 주		②대 표 자	
③주 소	(TEL) (FAX)		
④사 업 명			
⑤사 업 상 대 자			
⑥대 출 예 상 금 액			
<p>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4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자금대출 사전협의서를 제출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내용 2. 사업추진경위 3. 대출신청 예상내용 4. 추정수지 명세서 5. 차주의 개요 6. 제작자의 개요 7. 사업상대자의 개요 8. 협의서 (입찰안내서) 사본 9.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①</p> <p>통 일 원 장 관 귀 하</p>			
			수 수 료
			없 음

1106-022-00911번
 91. 4. 10 승인

210 mm ×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

경제협력사업
 반
 반
출입

자금대출조건변경신청서

[별지 제 11 호서식]

① 차 주				② 대 표 자		
③ 주 소	(TEL) (FAX)					
④ 사 업 명						
⑤ 대출승인일자				⑥ 대출승인액		
⑦ 대출 집행액		⑧ 상 환 액		⑨ 대출잔액		
⑩ 변경신청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 자금대출조건변경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1. 대출조건 변경사유서 2. 대출조건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⑪</p>						
봉 입 원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106-022-01111인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

채 무 보 증 신 청 서

[별지 제 12 호서식]

①의뢰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채무보증 신청내용	보 증 한 도		보 증 목 적	
	수 해 자			
	보 증 기 간	-	(통산 년 월)	
③사 업 명				
④보증대상 채 무	대 출 은 행		대 출 금 액	
	대 출 이 율		대 출 기 간	
	원리금상환방법			
	상 환 재 원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재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p>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1106-022-01211번
91. 4. 10 승인

210 mm ×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매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별지 제 13호서식]

①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TEL)		
	연락처	(FAX)		
② 손실보전 신청내용	금액			
	대상기간			
③ 손실발생 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조제 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5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손실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				
통일원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1106-022-01311번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특급) 80g/매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신청서

[별지 제 14 호서식]

①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TEL)		
	연락처	(FAX)		
② 지원자금 신청내용	금 액		지원대상 구 분	<input type="checkbox"/> 용 자 자 금 <input type="checkbox"/> 기 타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62 조제 1 항의 규 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용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p> <p>첨부서류 : 1. 용자 취급명세서</p> <p style="padding-left: 40px;">2. 자금지원 신청조건</p> <p style="padding-left: 40px;">3.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신청인 ③</p> <p style="margin-top: 20px;">통 일 원 장 관 귀 하</p>				
				수 수 료.
				없 음

1106-022-01411번
91. 4. 10 승인

210 mm x 297 mm
인쇄용지(복합) 80g/매

북한원화매매신청서

[별지 제 16 호서식]

①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TEL) (FAX)			
② 인수신청 금액	북한원화	금 ()			
	적용환율				
	원화	금 ()			
③ 보유경위					
④ 매각신청 금액	원화	금 ()			
	적용환율				
	북한원화	금 ()			
⑤ 북한원화 사용계획					
<p>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 7 조제 1 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 64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북한원화의 (인수·매각)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p>					
<p>봉일원장관 귀하</p>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margin-top: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수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없음</td> </tr> </table>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106-022-01611번
91. 4. 10 승인

210mmX 297mm
인쇄용지(복합) 80g/㎡

附 錄

〈남북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북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외국인 기업법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 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

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관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장 남북교류·협력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
현한다.

제 18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19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
를 개설한다.

제 20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 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21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 22 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
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23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
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
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 24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25 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3 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 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 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⑧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

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 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 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영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 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 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8조 이 합의서 「제 1 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물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공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

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14 조 이 합의서「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 15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 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 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17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 18 조 이 합의서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

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 · 발효

제 19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제 20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 22 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 사항을 협의·실천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체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제 1조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협조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자들이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2조 이 법은 외국투자자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외국투자자란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기업이란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말한다. 합작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운영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에 투자몹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몹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기업이란 외국 투자자가 단독으로 투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월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제 3조 외국 투자가는 공화국 영역안에 합작기업, 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 운영할 수 있다.

제 4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 5조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들과 개인 및 기타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제 6조 외국투자가는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채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을 비롯한 여러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 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 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 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사용 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 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을 보장받는다.

1. 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범위에서 떨어 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기업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자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 11 조 민족경제 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 12 조 외국 투자가는 화폐재산, 현물재산, 공업소유권, 기술비결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투자하는 재산과 재산권의 가치는 해당시기의 국제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평가한다.

제 13 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 대표부, 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 있다.

제 14 조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 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공화국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 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 15 조 국가는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해당 기관의 승인밑에 양도하거나 상속

할 수 있다.

제 16 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정부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력은 해당 로동기관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용하거나 해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에 따라 소득세, 기업운영세, 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18 조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 19 조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제 20 조 외국 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 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21 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 투자가와 협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 22 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 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 2조 합작기업은 우리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우리측이 생산과 경영을 하며, 합작계약조건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 몫을 상환하거나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조 합작기업은 수출할 수 있는 제품, 선진기술이 도입된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조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관광·봉사부문에 조직할 수 있다.

제 4조 국가는 외국 투자가가 현대적인 설비와 첨단기술을 투자하거나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합작을 할 수 있다.

제 6조 합작을 하려는 기관·기업소·단체는 해당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외국 투자가와 합작계약을 맺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에 합작신청서를 내야한다. 이 때에 신청서에는 계약서, 경제기술 타산서를 비롯한 해당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합작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 일안으로 그에 대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8조 합작기업은 합작이 승인된 후 30일안에 해당기업 소재지의 도·직할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날이 합작기업 창설일로 된다.

제 9조 합작기업은 승인된 합작 업종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승인된 업종을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합작을 하는 일방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다음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외국 투자자측의 기술자를 받아 쓰거나,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밑에 제 3국의 기술자를 채용하여 쓸 수 있다.

제 12조 합작기업은 국가가 승인한데 따라 생산 및 경영에 쓸 물자를 수입할 수 있으며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 13조 외국 투자가의 투자에 대한 상황과 이윤분배는 합작제품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 14조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이행하는데 먼저 쓸 수 있다.

제 15 조 외국 투자자가 합작기업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 기타 수입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16 조 합작 당사자들은 비상설적인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기술 도입과 제품의 질 제고, 재투자를 비롯한 합작경영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협의한다.

제 17 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결산을 월별, 분기별, 년별로 한다. 합작기업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기결산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며 재정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합작기업은 계약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19 조 합작 당사자들 가운데에서 어느 일방이 합작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승인밑에 합작기업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가 진다.

제 20 조 합작은 합작기간이 다 되면 끝난다.

합작기업은 합작기간이 끝나거나 기한전에 해산하는 경우 법이 정한데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며, 등록취소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합작 당사자들이 합작기간이 끝난후에도

합작을 계속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합작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 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외국인 기업법

제 1장 외국인 기업법의 기본

제 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들이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 2조 외국인 기업은 외국 투자가가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본의 전부를 투자하여 창설하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조 외국 투자가는 전자공업, 자동화공업, 기계제작공업, 식품가공공업, 피복가공공업, 일용품 공업과 운수·봉사를 비롯한 외국인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나라의 안정에 지장을 주거나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기업은 창설할 수 없다.

제 4조 국가는 외국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기업 운영에서 얻은 소득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조 외국 투자가는 공화국의 법과 규정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야 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 6조 공화국 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들도 이 법에

따라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독자적으로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외국인 기업의 창설

제 7 조 외국인 기업을 창설하려는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 기업 창설 신청서에 정무원 자금신용 확인서를 비롯하여 심의 비준에 필요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인 기업 창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80일안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국 투자가는 기업 창설이 승인되면 30일안에 기업 소재지의 도행정·경제위원회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을 등록한 날이 외국인 기업 창설일로 되며, 외국인 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2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재정기관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국인 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밑에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 기업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건설을 우리나라 해당 건설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 12 조 외국 투자가는 승인받은 외국인 기업 창설 신청서에

지적된 기간안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투자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투자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3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은 외국 투자가가 투자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외국인 기업 창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 기업의 경영활동

제 14 조 외국인 기업은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승인한 기업의 규약 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 15 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생산 및 수출입 계획을 내야 한다.

제 16 조 외국인 기업은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 수 있으며 생산과 제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팔 수도 있다.

제 17 조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원료, 자재, 설비를 사거나 생산한 제품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은 공화국의 해당 무역기관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 18 조 외국인 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외국인 기업은 외화관리 기관과의 합의 밑에 우리나라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나라 은행에 돈자리

를 들 수도 있다.

제 19 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 소재지안에 부기장부를 두어야 하며, 경영계산을 공화국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관련한 재정부 계산규범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한 노력을 기업 소재지의 노동기관과 맺은 계약에 따라 우리나라 노력으로 채용 하여야 하며, 채용한 노력을 해고할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다른나라 기술자·기능공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21 조 외국인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직업동맹 조직을 내올수 있다. 직업동맹 조직은 공화국 노동법규에 따라 종업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외국인 기업과 노동조건 보장과 관련한 계약을 맺고 그 이행을 감독한다. 외국인 기업은 직업동맹 조직의 활동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22 조 외국인 기업은 기업 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을 재투자 할 수 있고, 또는 공화국의 외화교환 통제 법률과 규정에 따라 해외에 송금할 수 있다.

제 23 조 외국인 기업이 보험에 들려고 할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제 24 조 외국인 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 25 조 외국인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는 그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

제 26 조 외국인 기업은 등록자본을 늘릴 수 있다. 외국인 기업이 등록자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기업은 존속 기간안에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

제 27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과 재정기관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 및 세무 정형을 검열·감독할 수 있다.

제 4 장 외국인 기업의 해산과 분쟁 해결

제 28 조 외국인 기업은 승인된 존속기간이 끝나면 해산된다. 외국 투자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을 해산하려고 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외국 투자가와 외국인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기업을 중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 30 조 외국 투자가는 외국인 기업이 해산되거나 파산되는 경우 기업을 등록한 도행정·경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산 또는 파산이된 외국인 기업의 재산은 청산수속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제 31 조 외국인 기업과 관련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분쟁사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 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한다.

남북교류협력관계법규집

초	관	1991년	5월	15일	인쇄
재	관	1992년	12월	31일	인쇄
3	관	1993년	8월	25일	인쇄
발	행	처	통	일	원
			전화 : 720-2145		
인	쇄	처	금강문화인쇄		

통	협	93-8-48	〈비 매 품〉		
---	---	---------	---------	--	--

